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97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3)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추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5)

[별지 제1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의 결과

<예 시>

구분	연도	1차년도 (2011년)	2차년도 (2012년)	3차년도 (2013년)	4차년도 (2014년)	5차년도 (2015년)	합 계
	세 출	0					
0							
소계(a)							
세 입	0						
	0						
	소계(b)						

3. 부대의견

○○○실, 과장 ○○○ (인)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6)

[별지 제2호서식]

○○○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구 분		1차년도 (2011년)	2차년도 (2012년)	3차년도 (2013년)	4차년도 (2014년)	5차년도 (2015년)	계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작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실, 과장 ○○○ (인)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7)

사천시 조례 제97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천시티투어 운영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 중 “규칙을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2조(관광진흥협의회 구성)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 등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각종 관광정책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 및 지원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검토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제14조(조직) 협의회의 임원, 회의 등 세부적인 조직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8)

사천시 조례 제97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시설사용료조례” 를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공설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 이라 한다)” 을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해수욕장” 을 “사천시공설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 이라 한다)” 으로, “다음과 같다.” 를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 해수욕장 시설 중 샤워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 를 “그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해지한 경우에는 개장기간에 대한 경과일수를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9)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피해복구) 위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과실로 시설물 또는 그
중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0)

[별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요율표

(단위 : 원)

시설별	구 분	기 준	요 금(원)
샤 위 장	1. 성인	1회	1,000
	2. 소인	1회	800
주 차 장	무 료		

- 비 고 -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성인 : 13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소인 :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1)

사천시 조례 제97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를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43조” 를 “제41조” 로,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를 “에 따라 도로점용료” 로 한다.

제2조 중 “도로” 를 “시도(이하 “도로” 라 한다)” 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으로 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으로 하며, “기타시설의” 를 “그 밖에 시설의” 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5,000원미만인” 을 “5,000원 미만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84조에 따라” 로, “점용료중” 을 “점용료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해당 연도분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2)

은 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7조 중 “2개연도이상”을 “2개연도 이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10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4조”를 “법 제42조”로, “시장이 정하는”을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4조제3호에서”를 “법 제42조제3호에서”로, “시장이 정하는”을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4조 규정함에 의한”을 “법 제42조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4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를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로, “전액을 면제한다.”를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를 “법 제42조제2호에”로, “기타”를, “그 밖에”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4호 진·출입로의 연도별 점용료 산정기준 중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 ※ 비고 중 제1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 →1,900원으로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3)

사천시 조례 제97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외에는”을 “외에는 이”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6항 중 “범위 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리자로서”를 “관리자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4)

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거주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용자 중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사천시일 경우에는 경남도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4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5)

사천시 조례 제97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사천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주사무소가 시에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6)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7)

사천시 조례 제9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중 연장자가” 를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8)

사천시 조례 제98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7일”을 “9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은 별표 2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19)

[별표 2]

(단위:만원)

위 반 사 항	위반회수	과 태 료	비 고
○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회 이상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출석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 증언(진술)거부 1회는 1일 중의 증언(진술)거부를 말한다. · 증인 선서거부 1회는 출석요구시마다 적용한다.
	2회	300	
	1회	100	
○ 증언(진술) 전체 거부	3회 이상	300	
	2회	200	
	1회	100	
○ 증언(진술) 일부 거부	3회 이상	150	
	2회	100	
	1회	50	
○ 정해진 기한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회	100	
	2회	50	
	1회	30	
○ 증인 선서 거부	1회	50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0)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51호

사천시 일상감사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일상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대상업무·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적용하고, 일상감사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상남도 계약심사규칙」과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도 본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일상감사 원칙)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1)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5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추진으로 일상감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요청서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에 부서장, 담당주사, 담당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제4조에 의한 계약심사대상사업과 중복될 경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해당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일상감사 접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면 의뢰문서를 반려하고, 일상감사 대상이면 제8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제9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사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2)

제8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일상감사 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일상감사 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결과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3)

② 감사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 및 조치결과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대상사업과 의견반영 사업의 추진상황은 각종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사천시 일상감사규정」(2009. 10. 19 일부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4)

[별 표]

일상감사 범위 및 시기

분 야	일상감사 범위	일상감사 시기
1. 공 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시행 품의 전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준공 및 기성검사 입회
	일상감사 대상공사중 설계변경 20%이상 증액	설계변경 시행품의 전
2. 용 역	건설기술용역 3,000만원	용역 시행품의 전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2,000만원	
3. 물품구매	구입금액 2,000만원 이상 단, 조달구입 제외	물품구입방침 시행품의 전
4. 기 타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및 예 산관리업무, 주택, 건축, 위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5)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의뢰부서 :

의뢰일자 :

1. 제 목 :

2. 사업개요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4. 일상감사 의뢰사유

5. 소요예산 현황

6. 대상업무 근거법령

7. 예상되는 문제점

8. 기타

첨부서류

1. 예산현황(예산과목) 또는 소요경비

2. 사업추진 경위(최종결재권자 사업추진 방침)

3. 설계도서 및 그 밖에 사업추진과련 검토자료 등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6)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의뢰부서 :

접수번호 :

제 목 :

분 야	감 사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7)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의뢰부서 :

접수번호 :

제 목 :

감 사 의 건	재검토 요청사유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8)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

의뢰부서 :

접수번호 :

제 목 :

재검토 요청사항	재검토 의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29)

[별지 제5호서식]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서

의뢰부서 :

접수번호 :

제 목 :

감 사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30)

[별지 제6호서식]

○○사업관련

「청 럽 이 행 서 약 서」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한 특혜를 배제하고,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공정한 업무 수행을 단호히 배척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요구시에는 담당자는 이를 거부하고 클린신고센터에 제보하겠습니다.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서장이 연대 서명한 「청 럽 이 행 서 약 서」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직급	성명	①
○○담 당	직급	성명	①
○○담당자	직급	성명	①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3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1-1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 12. 6.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1 - 11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1년 12월 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장목개 마을의 공유수면에 어선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 부잔교를 설치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을 위함.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894-21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234㎡(직접 : 24㎡, 간접 210㎡)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1년 12월 6일 ~ 2026년 12월 5일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의 승인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33)

승 인 조 건

1. 본 사업은 2011년도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공유수면에 PE 부잔교를 설치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건입니다.
2. 시설물 주변 해역에 각종 쓰레기 및 죽은 어류 등을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쓰레기(폐기물) 등은 발생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선박의 이·접안 및 급유 등에 따른 유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유류사고를 대비하여 유흡착포 등 해양오염 방제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4.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시설물 설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5.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관리 및 이용계획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물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해역이용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7.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8.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9. 허가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10. 위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34)

지적도근점성과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1-13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지적도근점성과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사 천 시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중횡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도(L)	위도(B)
기 준 원 점 명					
소 재 지	별 첨				
측 량 연 월 일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35)

2011 지적도근점 현황(신설)

측량기준 점명및 번호	평면적각중합선수치		표고 (m)	경위도		기준점명	소재지	측량연월일	측량실무보관장소	비고
	X(m)	Y(m)		경도(L)	위도(B)					
5629	173351.65	113381.07				등부림	사남 초전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0	173304.74	113553.79				등부림	사남 초전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1	173259.57	113794.22				등부림	사남 초전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2	173344.82	114063.39				등부림	사남 초전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3	173431.05	114280.53				등부림	사남 초전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4	173375.10	114503.12				등부림	사남 후천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5	173324.92	114699.61				등부림	사남 후천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6	173284.94	114930.85				등부림	사남 후천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7	173112.30	115040.21				등부림	사남 후천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8	173088.05	115113.75				등부림	사남 후천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39	172976.13	115050.12				등부림	사남 후천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40	172744.35	114975.69				등부림	사남 후천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41	172572.90	114920.85				등부림	사남 후천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5642	172383.56	114860.56				등부림	사남 후천	2011.01.26	민원지적과내	신설
1828	158078.15	116101.94				등부림	향운동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29	158137.01	116196.35				등부림	향운동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30	158204.38	116304.68				등부림	향운동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31	158180.46	116415.39				등부림	향운동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32	158367.74	116461.53				등부림	향운동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사 천 시 공 본

제286호(36)

측량기준 점명칭및 번호	점면적각중행선수치		포고 (m)	경위도		기준점명	소재지	측량연월일	측량성과보존장소	비고
	X(m)	Y(m)		경도(L)	위도(B)					
1833	158504.47	116495.18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34	158861.48	116604.12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35	158771.62	116561.36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36	158640.43	116528.81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37	159091.09	116618.79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38	159069.68	116687.14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39	158898.24	116901.13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0	158949.04	116878.33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1	159037.48	116871.10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2	159117.26	116764.78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3	159114.89	116705.71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4	159027.28	116763.68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5	158893.76	116730.83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6	158749.79	116694.94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7	158622.63	116663.93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8	158473.36	116606.74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49	157972.20	116164.96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50	158030.00	116320.67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51	158159.85	116469.84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52	158258.07	116546.63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53	158391.92	116607.10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54	158821.98	116926.65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55	158725.80	116793.82				양부천리	향촌암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사 천 시 공 본

제286호(37)

측량기준 결명징및 번호	평면적각중합선수치		포고 (m)	경위도		기준점점명	소재지	측량연월일	측량성과보관장소	비고
	X(m)	Y(m)		경도(L)	위도(B)					
1856	158719.14	116736.42				당부점명	향촌동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57	158617.34	116747.07				당부점명	향촌동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58	158509.25	116698.98				당부점명	향촌동	2011.07.11	민원지적과내	신설
1859	159718.56	118397.71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0	159649.60	118388.86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1	159631.16	118396.60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2	159594.40	118427.97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3	159585.62	118447.43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4	159563.58	118485.52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5	159532.53	118467.33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6	159495.18	118489.30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7	159464.79	118529.06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8	159424.31	118532.87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69	159447.23	118485.00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70	159342.18	118568.92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71	159400.35	118522.39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72	159406.10	118433.71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73	159472.82	118370.82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74	159525.19	118288.27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75	159562.27	118178.03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76	159660.29	118309.84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77	159609.02	118257.31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78	159581.43	118220.55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사 천 시 공 본

제286호(38)

측량기준 결명장및 번호	평면적각중합선수치		포고 (m)	경위도		기준점점명	소재지	측량연월일	측량성과보관장소	비고
	X(m)	Y(m)		경도(L)	위도(B)					
1879	159525.02	118413.41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0	159598.15	118364.26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1	159339.90	118413.72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2	159408.70	118332.26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3	159463.33	118288.36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4	159514.02	118173.45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5	159609.06	118010.67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6	159542.37	117945.84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7	159490.36	117918.23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8	159490.34	118011.44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89	159510.21	118084.09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90	159526.05	118141.23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1891	159685.18	118204.35				당부점명	향촌동	2011.08.12	민원지적과내	신설
3358	179625.40	112785.70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59	179590.85	112873.38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60	179685.26	112935.98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61	179775.47	113024.80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62	179784.16	113141.38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63	179665.27	113384.55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64	179725.50	113216.88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65	179682.32	113217.57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66	179732.46	113131.71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67	179715.55	113071.61				당부점명	수당반동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39)

측량기준 결명징및 번호	평면적각중환선수치		포고 (m)	경위도		기준점점명	소재지	측량연월일	측량성과보관장소	비고
	X(m)	Y(m)		경도(L)	위도(B)					
3368	179680.86	113003.74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69	179657.21	112962.27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0	179613.54	112927.98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1	179590.89	112890.03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2	179395.28	112781.14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3	179657.71	113280.43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4	179574.90	113358.65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5	179604.97	113260.53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6	179623.01	113184.35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7	179496.13	113189.63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8	179456.80	113107.99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79	179395.87	112857.63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0	179265.22	112789.77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1	179204.67	112784.11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2	179141.04	112756.14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3	179287.56	112861.23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4	179194.12	112869.77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5	179122.77	112889.61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6	179093.64	112915.13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7	179097.38	112955.84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8	179186.10	113092.51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89	179261.05	113225.17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90	179295.47	113343.72				당부점명	수당반용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0)

측량기준 결명장및 번호	점면적각중황선수치		포고 (m)	경위도		기준점점명	소재지	측량연월일	측량성과보관장소	비고
	X(m)	Y(m)		경도(L)	위도(B)					
3391	179376.36	113225.57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92	179097.63	113443.35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93	179079.29	113422.30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94	179074.36	113375.25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95	179085.32	113338.96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96	179105.19	113313.84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97	179094.89	113251.12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98	179090.00	113179.44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399	179087.22	113124.65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400	178613.88	113167.13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401	179060.81	113074.01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402	179030.18	113032.63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403	179019.72	112998.93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404	178997.26	112983.47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405	178979.63	112942.85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406	178945.66	112894.44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3407	178978.94	112921.54				당부점명	수당 반응	2011.10.27	민원지적과내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1-136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지적도근점성과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사 천 시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도(L)	위도(B)
기 준 원 점 명					
소 재 지	별 첨				
측 량 연 월 일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2)

지적삼각보조점 현황(신설)

측망기 기준점명 점번호	평면극좌표(중선수치)		표고 (m)	경위도		기준원점명	소재지	측망연월일	측망장부보판장소	검표
	X(m)	Y(m)		경도(L)	위도(B)					
65	157911.28	116127.70	88.14	85 54 48.8208 N	128 04 55.6208 S	등부원점	함춘동	2010.10.14	민원지적과내	
66	158184.22	116547.74	84.95	84 54 57.5113 N	128 05 12.0690 S	등부원점	함춘동	2010.10.14	민원지적과내	
67	158012.58	116086.79	41.12	84 55 21.0504 N	128 05 27.1851 S	등부원점	함춘동	2010.10.14	민원지적과내	
68	158082.17	116604.25	81.01	84 55 28.2211 N	128 05 14.0086 S	등부원점	함춘동	2010.10.14	민원지적과내	
69	158642.77	115457.65	81.51	84 55 11.8659 N	128 04 28.9584 S	등부원점	함춘동	2010.10.14	민원지적과내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3)

지적도근점폐기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1-137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지적도근점성과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사 천 시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중횡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도(L)	위도(B)
기 준 원 점 명					
소 재 지	별 칩				
측 량 연 월 일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4)

2011 지적도근점 현황(망실)

측량기준 점명칭및 번호	평면적각중첩선수치		포고 (m)	경위도		기준점명	소재지	조사일자	측량성적보관장소	결과
	X(m)	Y(m)		경도(L)	위도(B)					
2006	177,788.30	123,459.54				동부원점	금곡리	2011.08.31	민원지적과내	망실
2005	177,701.82	123,608.11				동부원점	금곡리	*	민원지적과내	망실
7315	180,897.84	107,836.08				동부원점	신흥리	2011.01.13	민원지적과내	망실
9176	167,038.14	104,633.40				동부원점	다평리	*	민원지적과내	망실
9923	167,038.14	104,633.40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9119	166,667.88	104,664.97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336	173,765.62	108,098.24				동부원점	원덕리	*	민원지적과내	망실
7185	178,492.42	103,032.55				동부원점	봉계리	2011.01.20	민원지적과내	망실
7189	178,717.82	102,958.82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229	177,927.32	107,540.50				동부원점	목곡리	*	민원지적과내	망실
8230	177,856.80	107,681.30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231	177,647.42	107,765.35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548	174,729.44	110,654.14				동부원점	검정리	2011.01.21	민원지적과내	망실
8369	174,838.64	110,727.63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509	174,994.62	110,949.89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519	175,008.54	111,051.06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536	175,108.50	111,081.88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507	174,936.24	110,786.60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508	174,978.26	110,858.58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5)

측량기준 점명칭및 번호	점면적각중항선수치		표고 (m)	경위도		기준점명	소재지	조사일자	측량성곽보관장소	결과
	X(m)	Y(m)		경도(L)	위도(B)					
8103	173,953.74	107,825.86				동부원점	완덕리	2011.07.10	민원지적과내	망실
8105	174,119.92	107,880.55				동부원점	*	2011.09.24	민원지적과내	망실
8108	174,287.05	107,977.11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8109	174,372.87	107,917.19				동부원점	*	2011.10.12	민원지적과내	망실
8107	174,189.33	107,984.35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7563	182,985.94	106,190.34				동부원점	금성리	2011.11.11	민원지적과내	망실
7562	182,899.25	106,043.46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1064	161,164.67	116,590.88				동부원점	용강동	2011.01.10	민원지적과내	망실
1665	161,248.42	116,622.56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1192	160,399.56	116,883.20				동부원점	벌리동	*	민원지적과내	망실
1193	160,407.38	117,005.73				동부원점	향촌동	*	민원지적과내	망실
1194	160,451.12	117,101.04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964	159,324.49	118,510.94				동부원점	*	2011.01.13	민원지적과내	망실
1819	159,322.40	118,513.72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1444	159,630.88	118,153.35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1348	159,519.69	115,470.89				동부원점	선구동	2011.01.17	민원지적과내	망실
1212	161,309.92	118,600.40				동부원점	이금동	2011.01.18	민원지적과내	망실
1211	161,271.62	118,540.60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1323	161,262.91	118,673.63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1324	161,262.91	118,673.63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1213	161,363.15	118,564.47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6320	166,448.02	114,604.89				동부원점	덕곡리	2011.01.26	민원지적과내	망실
6321	166,437.91	114,500.21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6)

측량기준 점명칭및 번호	점면적각중황선수치		표고 (m)	경위도		기존점명	소재지	조사일자	측량성곽보관장소	결과
	X(m)	Y(m)		경도(L)	위도(B)					
6322	166,408.96	114,407.29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6323	166,384.65	114,321.45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6324	166,400.48	114,245.74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411	161,068.08	116,533.30				동부원점	용강동	2011.02.17	민원지적과내	망실
594	159,039.04	115,316.78				동부원점	선구동	2011.03.09	민원지적과내	망실
667	159,014.64	115,375.92				동부원점	서금동	*	민원지적과내	망실
557	159,245.36	115,152.28				동부원점	선구동	2011.06.01	민원지적과내	망실
1072	161,457.36	115,866.50				동부원점	용강동	2011.04.06	민원지적과내	망실
1354	159,130.64	115,292.12				동부원점	선구동	2011.04.21	민원지적과내	망실
190	164,635.33	113,422.69				동부원점	송포동	*	민원지적과내	망실
342	160,993.72	118,310.72				동부원점	봉남동	2011.05.17	민원지적과내	망실
953	164,708.56	113,473.31				동부원점	송포동	2011.08.18	민원지적과내	망실
1355	159,114.16	115,272.11				동부원점	선구동	2011.09.07	민원지적과내	망실
5078	173,415.96	114,410.02				동부원점	죽천리	2011.02.28	민원지적과내	망실
5079	173,376.38	114,542.40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5161	173,469.33	116,472.54				동부원점	화전리	2011.11.28	민원지적과내	망실
5184	172,410.56	114,653.45				동부원점	죽천리	2011.02.28	민원지적과내	망실
5406	173,011.25	115,046.09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5461	173,416.01	114,410.10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5463	173,337.25	114,710.88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5464	173,280.03	114,905.80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5496	173,082.47	114,996.87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6135	169,655.31	114,827.57				동부원점	석계리	2011.03.07	민원지적과내	망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7)

측량기준 점명칭및 번호	점면적각중합선수치		표고 (m)	경위도		기존점명명	소재지	조사일자	측량성곽보관장소	결과
	X(m)	Y(m)		경도(L)	위도(B)					
3099	178,464.70	114,396.56				동부원점	탑리	2011.02.07	민원지적과내	망실
3100	178,355.50	114,352.01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3101	178,281.32	114,361.92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3102	178,200.50	114,380.68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3103	178,119.60	114,390.49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3104	177,999.18	114,363.34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2328	179,670.54	121,046.16				동부원점	두량리	2011.02.18	민원지적과내	망실
2045	179,117.94	121,881.01				동부원점	*	2011.02.21	민원지적과내	망실
3050	179,323.88	116,412.46				동부원점	사다리	*	민원지적과내	망실
3051	179,360.66	116,307.88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3052	179,439.59	116,254.78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2047	179,119.51	122,150.89				동부원점	두량리	2011.02.23	민원지적과내	망실
2242	175,144.55	115,696.56				동부원점	사주리	2011.02.25	민원지적과내	망실
4187	173,870.87	118,672.98				동부원점	수청리	2011.03.02	민원지적과내	망실
4331	173,870.37	118,673.03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4332	173,861.20	118,868.34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4333	173,878.77	119,009.64				동부원점	*	*	민원지적과내	망실
2039	178,711.15	121,339.00				동부원점	두량리	2011.03.09	민원지적과내	망실

사 천 시 공 보

제286호(48)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1-619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11. 21.

사 천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사남	농어촌 도로	풍정선	304	정동면 풍정리 266-3	정동면 풍정리 102-2	0.697	-	8	6	편입토지 분할로 인한 면적, 지번정정 및 도로구역 추가 편입, 권리조서 수정

2. 사업시행기간 : 2009. 12 ~ 2012. 12

3. 사업시행자 : 사천시청

4. 도면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장 소 : 사천시청 도로교통과

5. 첨부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물건의 세목조서, 노선지정도(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도로교통과(☎055-831-3376)로 문의바랍니다.

사 전 시 예 본

제286호(4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1	정동면 풍정리	611	도	3,197	803	국(건설부)					
		변경	611	도	3,197	803	국(건설부)				
2	정동면 풍정리	266-3	대	212	61	황찬우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20 홍보파인빌아파트 104-1503				
		변경	266-12 (266-3)	대	212	90	황찬우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20 홍보파인빌아파트 104-1503			
3	정동면 풍정리	266-7	도	10	10	확인호외 6인	고성군 구만면 호객리				
		변경	266-7	도	10	10	확인호외 6인	고성군 구만면 호객리			
4	정동면 풍정리	266-1	대	142	17	삭녕최씨사천 장파동친회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341-1				
		변경	266-11 (266-1)	대	142	27	삭녕최씨사천 장파동친회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341-1			
5	정동면 풍정리	266-5	대	17	17	확인호외 6인	고성군 구만면 호객리				
		변경	266-5	대	17	17	확인호외 6인	고성군 구만면 호객리			
6	정동면 풍정리	266-8	도	7	7	확인호외 6인	고성군 구만면 호객리				
		변경	266-8	도	7	7	확인호외 6인	고성군 구만면 호객리			
7	정동면 풍정리	266-4	도	106	106	확인호외 6인	고성군 구만면 호객리				
		변경	266-4	도	106	106	확인호외 6인	고성군 구만면 호객리			

사 전 시 엔 드

제286호(50)

일련번호	소제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8	당초	정동면 동정리 259-2	도	50	50	확인술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41				
	변경	정동면 동정리 259-2	도	50	50	확인술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41				
9	당초	정동면 동정리 260-2	도	33	33	신용희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				
	변경	정동면 동정리 260-2	도	33	33	신용희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				
10	당초	정동면 동정리 산20	임	3,849	36	최정경외 3인	울산시 상북면 금근정리 830-1				
	변경	정동면 동정리 산20-3 (산20)	임	3,849	94	최정경외 3인	울산시 상북면 금근정리 830-1				
11	당초	정동면 동정리 264-2	도	126	126	신추식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2				
	변경	정동면 동정리 264-2	도	126	126	신추식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2				
12	당초	정동면 동정리 264-1	전	671	19	신정기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				
	변경	정동면 동정리 264-4 (264-1)	전	671	45	신정기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				
13	당초	정동면 동정리 264-3	도	46	46	사천시					
	변경	정동면 동정리 264-3	도	46	46	사천시					
14	당초	정동면 동정리 산23	임	9,545	2,037	박명자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964 부곡뉴그린아파트 102-1104				
	변경	정동면 동정리 산23-3 (산23)	임	9,545	2,163	박명자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964 부곡뉴그린아파트 102-1104				

사 전 시 엔 드

제286호(51)

일련번호	소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15	당초	정동면 풍정리 산21	임	793	10	확원기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73-35					
	변경	정동면 풍정리 산21-1 (산21)	임	793	49	확원기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73-35					
16	당초	정동면 풍정리 200-1	담	711	711	신정기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					
	변경	정동면 풍정리 200-1	담	711	711	신정기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					
17	당초	정동면 풍정리 200-2	도	17	17	사천시						
	변경	정동면 풍정리 200-2	도	17	17	사천시						
18	당초	정동면 풍정리 605-7	구	126	17	국(건설부)						
	변경	정동면 풍정리 605-7	구	126	17	국(건설부)						
19	당초	정동면 풍정리 268-2	대	601	19	확경표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68-2					
	변경	정동면 풍정리 268-2	대	601	-	확경표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68-2					
20	당초	정동면 풍정리 268-3	도	69	27	사천시						
	변경	정동면 풍정리 268-3	도	69	27	사천시						
21	당초	정동면 풍정리 255-4	도	7	7	확감성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3					
	변경	정동면 풍정리 255-4	도	7	7	확감성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3					

사 전 시 험 편

제286호(52)

일련번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평일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22	당초	정동면 풍정리	268-1	도	63	34	최갑민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98					
	변경	정동면 풍정리	268-1	도	63	63	최갑민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98					
23	당초	정동면 풍정리	255-2	대	182	5	신용희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2					
	변경	정동면 풍정리	255-2	대	182	-	신용희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2					
24	당초	정동면 풍정리	255-1	대	340	66	최락득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					
	변경	정동면 풍정리 (255-1)	255-6 (255-1)	대	340	29	최락득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					
25	당초	정동면 풍정리	257	달	962	63	최락득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					
	변경	정동면 풍정리	257-1 (257)	달	962	35	최락득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55					
26	당초	정동면 풍정리	259-1	달	1,355	209	최인대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98					
	변경	정동면 풍정리	259-4 (259-1)	달	1,355	160	최인대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98					
27	당초	정동면 풍정리	260-1	달	1,689	305	신은순	진해시 여좌동 8-20 승진빌라 501					
	변경	정동면 풍정리	260-3 (260-1)	달	1,689	266	신은순	진해시 여좌동 8-20 승진빌라 501					
28	당초	정동면 풍정리	262-2	도	86	86	최동국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86					
	변경	정동면 풍정리	262-2	도	86	86	최동국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86					

사 전 시 인 편

제286호(53)

일련번호	소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평일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29	당초	정동면 동정리 262-3	달	648	266	최을민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307-4					
	변경	정동면 동정리 (262-3)	달	648	199	최을민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307-4					
30	당초	정동면 동정리 262-1	달	2,268	273	최을민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307-4					
	변경	정동면 동정리 (262-1)	달	2,268	241	최을민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307-4					
31	당초	정동면 동정리 263	달	145	24	최을민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307-4					
	변경	정동면 동정리 263	달	145	-	최을민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307-4					
32	당초	정동면 동정리 199-1	달	2,417	442	신정기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					
	변경	정동면 동정리 199-3,4	달	2,417	293	신정기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					
33	당초	정동면 동정리 산23-1	임	6,323	193	강상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33-5					
	변경	정동면 동정리 산23-4,5	임	6,323	303	강상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33-5					
34	당초	정동면 동정리 201-4	도	76	76	사천시						
	변경	정동면 동정리 201-4	도	76	76	사천시						
35	당초	정동면 동정리 201-1	전	284	36	최인환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20 송보파인빌아파트 202-704					
	변경	정동면 동정리 (201-1)	전	284	142	최인환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20 송보파인빌아파트 202-704					

사 천 시 인 편

제286호(54)

일련번호	소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면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36	당초	정동면 풍정리 204-3	도	169	169	사천시					
	변경	정동면 풍정리 204-3	도	169	169	사천시					
37	당초	정동면 풍정리 204-1	전	502	502	최옥산공중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66-1				
	변경	정동면 풍정리 204-1	전	502	502	최옥산공중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66-1				
38	당초	정동면 풍정리 산24	임	17,150	440	강릉김씨소계 공파공중	사천시 축동면 배촌리 776				
	변경	정동면 풍정리 산24-2 (산24)	임	17,150	405	강릉김씨소계 공파공중	사천시 축동면 배촌리 776				
39	당초	정동면 풍정리 205-1	전	208	48	정영수	통영시 무전동 356-88				
	변경	정동면 풍정리 205-3 (205-1)	전	208	48	정영수	통영시 무전동 356-88				
40	당초	정동면 풍정리 산30	임	4,463	980	강릉김씨소계 공파공중	사천시 축동면 배촌리 776				
	변경	정동면 풍정리 산30-1 (산30)	임	4,463	482	강릉김씨소계 공파공중	사천시 축동면 배촌리 776				
41	당초	정동면 풍정리 102-2	임	826	126	사천시					
	변경	정동면 풍정리 102-2	임	826	126	사천시					
42	당초	정동면 풍정리 201-2	도	109	109	최경민					
	변경	정동면 풍정리 201-2	도	109	109	최경민					

삭 전 시 영 문

제286호(55)

일련번호	소제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면임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43	당초	정동면 동정리 201-3	전	102	102	최인환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20 홍보파크인빌아파트 202-704				
	변경	정동면 동정리 201-3	전	102	102	최인환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20 홍보파크인빌아파트 202-704				
44	당초	정동면 동정리 199-2	도	112	112	신주식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2				
	변경	정동면 동정리 199-2	도	112	112	신주식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55-2				
45	당초	정동면 동정리 204-2	도	152	152	최옥산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66-1				
	변경	정동면 동정리 204-2	도	152	152	최옥산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266-1				
46	당초	정동면 동정리 210-3	도	122	122	최진상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07				
	변경	정동면 동정리 210-3	도	122	122	최진상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07				
47	당초	정동면 동정리 210-1	전	777	73	최정기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74				
	변경	정동면 동정리 210-4.5	전	777	164	최정기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74				
48	당초	정동면 동정리 205-2	도	17	17	사천시					
	변경	정동면 동정리 205-2	도	17	17	사천시					
49	당초	정동면 동정리 210-2	도	23	23	최진상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07				
	변경	정동면 동정리 210-2	도	23	23	최진상	사천시 정동면 동정리 507				

사 천 시 인 편

제286호(5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트 지 소 유 자		판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50	당초	정동면 풍정리 605-2	구	23,604	38	국(전월부)					
	변경	정동면 풍정리 605-2	구	23,604	38	국(전월부)					
51	당초	정동면 풍정리 101-2	유	13	13	사천농지 개발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95-1				
	변경	정동면 풍정리 101-2	유	13	13	사천농지 개발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95-1				
52	당초	정동면 풍정리 101-1	유	245	45	사천농지 개발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95-1				
	변경	정동면 풍정리 101-1	유	245	-	사천농지 개발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95-1				
53	당초	정동면 풍정리 102-1	임	75	75	사천농지 개발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95-1				
	변경	정동면 풍정리 102-1	임	75	75	사천농지 개발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95-1				
54	추가	정동면 풍정리 산20-4 (산20-2)	임	324	3	최인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37-1				
	당초			85,851	9,400						
합계	변경			86,175	9,000						